

- 2022학년도 제10차 - 규정심의위원회

2022. 8. 17.

〈심의 안건〉

1. 10-1-32 「인권센터규정」 개정에 관한 건(인권센터)
2. 3-3-5 「내부감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예산조정팀)
3. 3-1-5 「교원인사규정」 개정에 관한 건(교무학사팀)
5. 4-1-9 「외국인학생규정」 개정에 관한 건(글로벌교육지원센터)



우석대학교 기획평가팀
WOOSUK UNIVERSITY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10-1-32 인권센터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인권센터		
관련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 평의회	특이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인권센터규정 조항 단순 오류로 조항을 바로 잡음		
관련근거	· 규정 조항 오류(제19조제5항 없음)		
기대효과	· 인권센터 조항 오류를 바로 잡음으로써 인한 인권센터 운영의 내실화		
주요내용	· 제19조제5항 조항이 없으며, 단순 오류로 해당 조항 “제18조제5항”으로 바로 잡음		
기타사항			
참고사항	제25조(신고의 각하) ①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9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제19조제5항)은 조항이 없음		
	제18조(상담 및 신고)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은 사유가 발 생한 날부터 5년 이내, 기타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 터 1년 이내로 한다.		
첨 부	. 개정 내용 신.구조문대비표		

인권센터 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5조(신고의 각하) 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각하한다. 1. 제19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제3자가 신고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지 않음이 명백한 경우 3.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이거나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이 없는 경우 4. 신고를 철회한 후 동일한 사안을 다시 신고한 경우 5.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한 신고 등 그 밖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절한 경우 ② 센터장은 신고가 각하된 경우 20일 이내에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그 결과와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신고의 각하) ① 현행과 같음 1. 제18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신고가 접수된 경우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0-1-32 인권센터 규정

제4장 조사와 구제절차

- 제18조(상담 및 신고)** ① 인권침해 등을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인권센터에 상담 신청 및 신고할 수 있다.
- ② 해당사건의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서면, 전화, 팩스, 전자우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 ③ 상담 신청 및 신고는 익명으로도 할 수 있다.
- ④ 인권센터 이외의 학내 기관이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인권센터에 이관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의 신고는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성희롱·성폭력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 기타 인권침해에 관하여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 ⑥ 인권센터는 신고를 접수하는 때에는 신고자에게 사건처리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 제19조(임시조치)** 센터장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심의·의결 이전이라도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피신고인, 관계부서의 장 등에게 다음 각호의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인권침해의 직시 중지 등
 2. 공간분리 조치, 피해자 등에 대한 일체의 연락 및 접촉 금지 등
 3. 피신고인의 수업 및 업무 배제
 4. 그 밖에 피해자의 안전, 학습권 및 노동권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 제20조(조사개시 및 처리)** ① 센터장은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를 개시하여야 한다.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3-3-5 내부감사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예산조정팀		
관련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해당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정기감사 주기 명시		
관련근거			
기대효과	• 정기감사의 주기를 구체화 하여 감사의 공정성 강화		
주요내용	• 정기감사 주기 명시		
기타사항			
참고사항			
첨 부	내부감사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내부감사규정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4조(감사의 종류) ①감사는 정기감사와 특정감사로 구분한다. (개정 2018.0814.) ②정기감사는 <u>각 부서 및 학과(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되, 감사대상부서 및 학과(부)나 감사사항을 표본 추출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u> (개정 2016.5.1., 2018.02.27) ③특정감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특정부서, 특정학과(부) 및 특정업무에 대하여 실시한다.(개정 2018.02.27., 개정 2018.0814.) 1. 총장의 지시가 있는 경우 2. 부서장, 학과(부)장 또는 부속기관의 장의 의뢰가 있는 경우 ④제3항 제2호에 의한 특정감사는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14.) ⑤기획처장은 특정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총장에게 특정감사를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8.0814.)	제4조(감사의 종류 및 주기) ①현행과 같음 ②정기감사는 <u>5년을 주기로 모든 기관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학교의 여건 및 감사대상기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u> ③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④현행과 같음 ⑤현행과 같음
제 3 장 부서감사 계획과 실시 제12조(정기감사계획) ①기획처장은 정기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정기감사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정기감사 실시 결과의 요약 2. 감사대상 부서 3. <u>감사대상 업무 내용</u> 4. 감사실시 기간 5. 감사반의 구성 6. 기타 참고사항	제 3 장 <u>감사</u>계획과 실시 제12조(정기감사계획) ①~②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감사대상 부서 <u>및 학과(부)</u> 3. <u>점검사항</u>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6. 현행과 같음
제 4 장 학과지도감사 계획과 실시 제19조(감사대상 학과(부) 선정) 감사대상 학과(부)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강계획서 제출 횟수 상위 학과(부) 2. 수업계획서 기한내 미입력 학과(부) 3. 강의평가 하위 학과(부) 4. 수업과 관련하여 학생 민원이 발생한 학과 (부) [조신설 2018.02.27]	<장 삭제>

현행	개정
제20조(점검사항) 학과지도감사 시 점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임교원, 비전임교원의 수업 관리(휴·보강, 출결관리 등) 실태 2. 학생활동 및 학생 지도 관리 실태 3. 학과(부) 홍보 및 대외 협력 실적 관리 실태 4. 공문 서류철 관리 실태 5. 기타 필요한 사항 [조신설 2018.02.27] 제21조(준용) 학과지도감사에 대하여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규정 제3장을 준용한다. [조신설 2018.02.27]	
	부 칙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3-1-5 교원인사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교무학사팀		
관련부서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원회	'특이사항 없음'		
제정·개정 폐지사유	• 비전임교원의 정년은 「교육공무원법」, 「고등교육법」, 「우석학원정관시행세칙」에 정년을 정하지 않았기에, <u>연령제한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u>		
관련근거	• 「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 및 「고등교육법」제12조(교직원의 구분)		
기대효과	• 정년퇴직한 교원을 초빙교원으로 확보하고, 초빙교원은 주당 9시간의 강의를 진행함으로써 전년대비 교원확보율(시수) 증가 기대		
주요내용	• 교원의 연령제한은 전임교원 및 강사로만 제한한다. 단, 요건을 충족하는 정년 퇴직 교원에 한해서 초빙교원으로 연장 임용할 수 있으나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사항			
참고사항			
첨 부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교원인사규정 개정(안) 신 · 구조문대조표

현행	개정 (안)
제6조(정년) 교원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u>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교원에 대하여</u> 정년을 만70세로 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2. 연구업적과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 3. 강의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자	제6조(정년) 전임교원 및 강사의 정년은 만 65세가 되는 날이 있는 학기의 최종일로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u>정관 시행규칙 제2조(교직원의 정년)에서 정한 초빙교원에 대하여</u> 정년을 만70세로 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부 칙(학교법인 우석학원-(2022.00.00..)호)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1-1-2 우석학원 정관시행세칙

학교법인 우석학원 정관 시행세칙

제2조(교직원의 정년) ① 교원의 정년은 62세로 한다. 대학교 교원의 경우 정년은 65세로 하며 정관 제43조제2항의 임면규정에 따른다. 단,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박사학위 소지자, 처장 이상 직에 있으면서 연구업적과 학교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로서 육체적인 건강(강의능력)에 지장이 없으면 초빙교원으로 임용계약에 의하여 연장 임용할 수 있으나 70세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장의 정년은 예외로 한다.

② 직원의 정년은 60세로 한다 (개정 2007.7.27., 2014.2.18.,2016.2.22)

③ 정년에 달한 직원은 그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퇴직한다. 다만, 학교발전에 크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1년 단위 임용계약에 의하여 연장임용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보수는 따로 정한다.

규정 제정 · 개정 · 폐지 요청서

규 정 명	4-1-9 외국인학생규정		
구 분	☐ 제 정	☒ 개 정	☐ 폐 지
주무부서	글로벌교육지원센터		
관련부서	대학원		
부서 간 협의 결과	특이사항 없음		
대학평의회	특이사항 없음		
개정 사유	· 교육국제화역량인증제 결과, 외국인 유학생 유치 루트 다양화 등으로 유학생 유치를 위한 한국어능력 입학기준 세분화		
관련근거	· 외국인학생규정		
기대효과	· 유학생 유치 전략 다변화에 따른 유치 인원 확대		
주요내용	· 한국어능력 입학기준 세분화		
기타사항			
참고사항			
첨 부	· 업무분장규정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외국인학생규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한국어능력에 따른 입학기준) ①외국인학생의 한국어능력에 따른 신(편)입학 기준은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시행하는 TOPIK 3급 이상 취득으로 한다. (개정 2012.3.29., 2014.3.5.) 1. <삭제 2011.10.12.> 2. <삭제 2011.10.12.>	제3조(한국어능력에 따른 입학기준)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완화할 수 있다. <u>1. 학부과정 신입생</u> <u>2. 교환학생</u> <u>3. 정부초청 장학생</u> <u>4. 외국정부지원 장학생</u> <u>5. 교류대학과의 협정에 따른 학부 편입생 및 대학원 신·편입생</u> <u>6. 이공계 및 예체능계열의 학부 편입생 및 대학원 신·편입생</u>	②현행과 같음 <u>1. 교환학생</u> <u>2. 정부초청 장학생</u> <u>3. 외국정부지원 장학생</u> <u>4. 이공계 및 예체능계열의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u> [본항개정 2022.00.00]
③학부과정에 편입하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호 신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 제1항의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u>1. WOW-TOPIK 3급 이상 취득</u> <u>2. 세종학당 중급 1 이상 수료, 단 이공계 및 예체능계열은 초급 2 이상 수료</u> <u>3. 우리 대학 한국어교육지원센터에서 3학기 이상 수료</u> <u>4. 교류대학 및 기관과의 협정에 따른 학부 및 대학원 신·편입생</u>
	이 규정은 2022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

[근거 1] 3조 2항: 표준업무처리요령 4~6페이지 (2019.4.30.)

다. 입학허가 심사

- 중략 -

[4년제 대학, 대학원, 대학원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

- 한국어능력시험(TOPIK) : 3급 이상 입학*, 졸업 전까지 4급** 이상 취득

* TOPIK 2급 소지자에 대한 입학을 허용할 경우, 입학 후 1년간 300시간 이상의 한국어연수 필수 이수(단, 입학 전 1년 내 대학에서 지정한 온·오프라인 한국어 강좌 이수 시 최대 20시간까지 필수

이수시간으로 인정 가능)

※ 인정 가능한 온·오프라인 강좌(예시): 세종학당(오프라인), 누리-세종학당(온라인), K-MOOC 한국어 강좌, 코스넷(KOSNET), 스터디코리안

** TOPIK 4급을 취득하지 못한 유학생 중 일정 기준을 충족(TOPIK 4급 필요점수의 90%이상 점수 획득, 평가 시점까지의 전 학년 출석 90% 이상 및 평균학점 C 이상)하는 경우에는 유학생 유치·관리 역량 인증 평가(실태조사 포함)의 4급 취득 실적 소명자료로 인정

- 중략 -

- 일부과정(교환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 예체능 학과 입학생, 이공계 대학원 입학생, 이중언어 과정* 입학생)의 경우 입학·졸업 기준 완화 가능

* 이중언어 과정: 졸업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학점의 50% 이상이 한국어 외에 외국어(또는 한국어-외국어 통역 제공)로 진행되는 학사 단위를 의미

- 중략 -

라. 입학규정 관련 기타 사항

- 각 대학은 외국인 유학생 입학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유학생을 선발하도록 한다.
- 대학은 관련 규정의 범위 내에서 유학생 선발에 대한 자율성을 지닌다.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선발 기준상의 조건(예: 한국어 성적 우수 등)이 없는 입학생 일률적 학비감면은 지양한다.
- 대학은 유학생 등의 입학 시 보증금 예치를 지양한다.
- 대학은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유학생 선발, 유학원 위탁에 의한 유학생 선발을 지양한다.
 - 특히, 대학이 유학원으로부터 금전·수수료 등을 받고 유학생 등을 입학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금지한다.

[근거 2] 3조 3항 2호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17페이지 (2022.6.15.)

6) 하위대학 어학(한국어, 영어)능력 요건 특례

○ 적용 대상 : 하위대학의 입학생(D21~D28)으로 법무부장관 고시 21개국 및 중점관리 5개국 국민에게만 적용

- 단, 복학생, 정부초청장학생, 외국정부지원 장학생의 경우 대학 자체 입학기준을 적용

☞ 인증대 및 일반대학에 대해서는 한국어 능력 구비를 권장하며, 요건을 갖춘 경우 사증발급(자격변경)시 심사요건 일부 생략 등 우대

○ 한국어 능력

- 전문대학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1 이상

- 대학·대학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예체능은 TOPIK 3급,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

1 이상) 또는 세종학당 한국어 중급2 이상

- 단, 학위과정 구분에 관계없이 교환학생(D-2-6)에 대해서는 TOPIK 2급 이상 요구(국내 대학 학위가 부여되지 않는 자에 한함)

※ 주의 : TOPIK, 세종학당 한국어를 제외한 대학 자체 평가 등 비공식 능력 검증 등 기타증빙 자료 불인정

[근거 3] 3조 3항 3호: 외국인 유학생 시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40페이지 (2022.6.15.)

1) 다. 체류기간 연장의 특례

가) 1) 상급학교 진학예정자

① 어학연수생의 학위과정 진학

- (대상) 체류기간 만료일로부터 학기 시작일까지의 공백이 3개월 이내인 자로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자
 - i) 한국어연수 과정을 마친 후 동일 대학의 전문학사 이상 과정에 진학 예정인 경우 (단, 타 대학 상급과정 진학 시 일반대 이상의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에만 허용)
 - ii) 토픽 3급(KIIP 3단계 이수) 이상자 또는 국내에서 1년 6개월 이상 어학연수 자격으로 체류한 자로 대학 입학조건에 상당하는 어학 능력을 갖춘 자(성적증명서, 지도교수의 확인서 등으로 확인)